

인지체계 속의 언어기능

문 경 환
연세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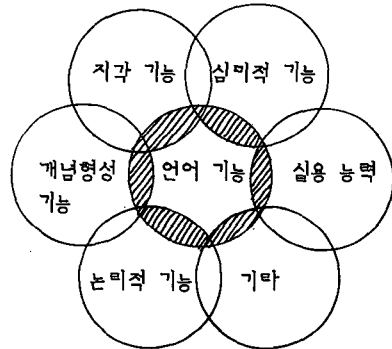
The Language Faculty in Cognitive System

Moon, Kyung-Hwan
Yonsei University

언어 연구에 관한 방법론은 단위구조적(modular) 접근방법과 총체론적(holistic) 접근방법으로 대별될 수 있다. 전자는 인지체계가 독자적 인지단위로 나뉘어져 있으며 그 중 하나가 언어기능임을 가정하고 있다. 즉 언어는 언어기능과 여타 인지단위가 상호작용함으로써 성립된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이에 비해 후자는 언어가 총체로서의 인지체계의 소산임을 가정하며, 따라서 언어기능이란 존재를 부정한다. 이러한 총체론적 언어이론에서는 신체의 구조가 보이는 단위구조성과 심적 구조의 총체성 사이의 '불균형'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의 의문이 제기된다. 이 글에서는 단위구조설의 내용이 간략히 소개된다. 언어기능을 이루고 있는 보편문법 및 개별문법의 개념이 논의되는 가운데,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계속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른바 '문법성'의 개념이 종점적으로 다루어 진다. 문법성과 허용성이 별개의 개념일진대, 문법적이면서도 허용되지 않는 문장이 있을 수 있고, 비문법적이면서도 허용되는 문장도 있을 수 있어야 한다. 이 후자의 경우도 실제로 존재함이 보여질 것이다.

쑤스키파 생성문법이론 — 이하 이론언어학이라 칭함 — 은 철학의 한 분야인 인식론에 관련된 학문분야라 할 수 있다. 즉 인간이 "안다"라고 할 때 그 "안"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다시 말해 "안"의 속성은 무엇인가 하는 인식론적 의문에 대한 해답을 언어 연구를 통해 (부분적으로나마) 찾아 보려는 것이다. 쑤스키가 자신이 추구하고 있는 학문 분야에 "언어학"이라는 명칭보다는 "인지 과학"이라는 명칭이 적절하다고 스스로 밝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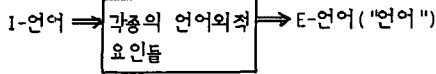
안이 인간 고유의 생물학적 특성이라면 (이 가정을 부정하는 사람이라면 이 시점에서 입기를 중단하면 된다) 그리고 안의 속성을 언어를 통해 규명할 수 있다면, 언어기능 또한 생물학적으로 인간에게만 부여된 속성이라 가정해야 한다. 이론언어학적으로는 이 가정에 두 가지의 구체적 명제가 수반된다. 그 하나는 언어기능이 인지체계 속에 독자적으로 존재한다는 자율성(autonomy)의 명제요, 또 하나는 이 언어기능이라는 인지 단위가 여타의 언어 외적 인지단위와 서로 연결되는 과정 속에서 구체적 언어가 성립된다는 상호작용성(interactionality)의 명제이다. 이 두가지 명제를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단위구조성(modularity)이라는 용어가 사용된다. 편의상 이를 다음과 같은 도표로 나타낼 수 있다.



부연컨대 이론언어학은 결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리키는 '언어'가 유독 언어기능만의 소산임을 암시하지 않는다. 통상적 의미의 '언어'는 언어기능과 여타 인지기능이 상호작용하는 영역 — 즉 위 도표에서의 사선부분 — 에서 성립되는 것이다.

물론 언어기능의 독자성이 가정된 이상 이 기능만으로 창출되는 언어의 속성이 있음도 가정된다. 쑤스키는 이 속성을 내재화된(internalized) 언어(이하 "I-언어"라 칭함)라고 규정한다. 통념적 의미의 '언어'는 I-언어가 외현된(externalized) 언어("E-언어")라는 것이다. 위의 도표는 E-언어가

마치 언어기능과 여타 인지기능과의 1 대 1의 관계에서 성립되는 듯한 인상을 주는데, 실상 이 기능들의 상호작용은 동시 복합적일 터이다. 따라서 방금 언급된 I-언어와 E-언어의 개념에 입각하여 다음의 보조적 도표를 첨가해 둔다.



I-언어는 다른 말로 '문법'이라 할 수 있다. 문법은 순수히 언어적인 현상에 대한 연역적 추론을 가능케 하는 원리와 법칙의 합이다. 주어진 문장이 '문법적'이라 함은 그 문장이 문법체계에 의해 (즉 입체의 언어외적 요인의 영향을 받지 않고) 창출됨을 의미한다. 즉 '문법성'은 일반 언어사용자가 문장에 대해 가지는 가치판단, 즉 "직관"과는 본질적으로 생각해야 할 기술적 용어이다. 언어 사용자가 문장에 대하여 가지는 직관은 그 문장에 대한 "허용성" 판단이며, 여기에는 수많은 언어외적 변수가 작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문법성 판단'이란 말은 잘못된 것이다. 언어사용자의 판단은 어디까지나 "허용성 판단"인 것이다. 다시 말해 언어사용자가 자신의 언어에 대하여 가지는 직관은 E-언어에 대한 직관이며, 주어진 표현이 I-언어이나 아니냐는 이론에 의해 정립된 문법체계를 통해 밝혀지는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주어진 문장이 문법적이라 함은 그 문장이 해당 개별문법(particular grammar)의 원리 및 법칙에 어긋남이 없음을 의미한다. '문법성'은 보편문법(universal grammar)과 관련된 개념이 아니라는 점이 강조되어야 하겠다. 따라서 우리는 I-언어를 I^{UG}-언어와 I^{PG}-언어로 구분하여 생각할 필요가 있다. 어떤 문장이 문법적이라 함은 그 문장이 I^{PG}-언어임을 의미한다. 즉 I^{UG}-언어이면서도 "비문법적"으로 규정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비문법적"인 문장은 곧 "언어기능 속에 존재하지 않는" 문장이라는 개념은 잘못된 것이다. 비록 비문법적이지만 — 즉 I^{PG}-언어는 아니지만 — I^{UG}-언어의 자격으로서 쓰여지는 문장도 있을 수 있다는 말이다.

바꿔 말해, 언어기능을 논함에 있어서는 보편문법의 개념뿐만 아니라 개별문법의 개념도 중요하다. 우리는 모든 언어에 진실인 보편적 속성뿐 아니라, 인간 개개인이 자신의 모국어에 대해 갖고 있는 언어지식도 포착해야 하는 것이다. 요컨대 언어이론은 보편문법과 개별문법의 관계를 밝혀야 하는데, 이 관계가 곧 언어습득의 원리이다. 어린이의 마음은 어떤 종류의 언어라도 수용할 수 있는 "초기 상태"로부터 출발하여, 특정 언어에 노출되면서 점차적으로 그 언어의 속성으로 채워져, 결국 "불변상태"에 도달하게 된다. 그 초기상태에서 주어진 보편문법의 원리들에는 매개변항이 장치되어 있을 수 있는데, 이 매개변항의 가치가 모두 고정된 불변상태가 곧 개별문법인 것이다.

간단한 예로서 다음을 생각해 보자.

1. a. What kind of books do you read?
- b. *What kind do you read of books?

2. a. How many apples do you have?
- b. *How many do you have (of) apples?
3. a. Was für ein Buch reden Sie?
- b. Was reden Sie für ein Buch?
4. a. Combien de pommes avez-vous?
- b. Combien avez-vous de pommes?

영어의 (1b) (2b) 같은 예문은 "말도 안된다"라고 치부해 버릴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론언어학자에게는 그와 같은 문장이 "말도 안된다" 이유는 하나도 없으니, (1b)에 해당하는 독일어 문장 (3b) 그리고 (2b)에 해당하는 불어 문장 (4b)은 모두 완벽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1b)나 (2b) 같은 문장이 영어에서 I^{PG}-언어로 존재할 수 없는 — 즉 "비문법적"인 — 이유를 밝혀야 하는데, 그러면서도 그 문법적 장치는 독일어나 불어의 I^{PG}-언어도 수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이른바 이동제한 원리(bounding principle)에 설정된 한계마디(bounding node)의 S와 T가 매개변항으로 작용함이 상기된다. 영어에서는 그 가치가 S로, 독일어나 불어에서는 T로 굳혀진다고 가정하면, 문제의 영어 문장은 "하위인접조건"(subadjacency)를 어기는 셈이다. 요컨대 어린이의 "초기상태"에서는 S와 T가 모두 한계마디의 가능성으로 존재하나, 특정 언어에 노출되면서 점차 그 둘 중 하나만 선택된다는 뜻이다.

위에서 언급되었듯이, 주어진 문장이 "비문법적"이라 함은 "I^{PG}-언어가 아닌"을 의미할 뿐, 그 문장이 언어기능 속에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나아가 그 문장이 "사용 불가능함"을 의미하는 것은 더욱더 아니다. 문법성과 허용성은 별개의 개념이므로, 우리는 적어도 논리적으로 두 가지의 상반된 경우를 추찰해 볼 수 있다. 그 하나는 문법적이면서 허용되지 않는 경우, 또 하나는 비문법적이면서 허용되는 경우이다.

첫번째 경우의 간단한 예로 다음과 같은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다.

5. a. Golf played Max.
- b. Colorless green ideas sleep furiously.

이 문장들은 구조상 아무런 하자가 없는 "문법적" 문장이거나, 일반적으로는 허용되지 않는다. 일반적 상황이라면 그 의미가 통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특수한 정황만 마련되면 얼마든지 사용될 수 있다. 예컨대 "어제는 맥스가 골프를 치는 게 아니고 골프가 맥스를 치고 있더군" 하고 말할 수 있는 정황이라면 (5a) 같은 문장이야말로 멋진 표현이다. (우리나라 말에서도 "지금은 자네가 술을 마시는 게 아니고 술이 자네를 마시고 있는 거야"라고 말할 수 있듯이.) 또한 (5b) 같은 문장은 은유적 표현으로는 얼마든지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실제로 어떤 시인에 의해 사용되었다고 한다. 그 시인이 문제의 표현을 시기에 사용한 의도가 어디에 있던간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위의 문장들은 일반적

으로는 사용되지 않지만 실용적으로 허용 (pragmatically acceptable) 되거나, 은유적으로 허용 (metaphorically acceptable) 되거나, 아니면 "시적으로 허용" (poetically licensed)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표현을 사용 가능케 하는 정황이 마련되는 것을 문맥화 (contextualization)라 한다.

문맥화는 의미적 측면에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다. 다음 문장을 보자.

6. a. The girl the boy whose dog barked chased screamed.
- b. If because when you came in she left you were angry, she'd be really disappointed.
- c. 영수가 영희가 내가 안갔다고 울었다고 말했다.

이 문장이 아무리 "이상"하게 보이더라도 실은 문법적이다. 즉 영어의 그 어떤 문법규칙도 어기지 않은 I PG-언어인 것이다. 그 "이상함"의 이유는 문법 외적 요인에서 찾을 수 있는 바, 인간의 단기성 기억능력이 그 하나이다. 예컨대 (6a)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세 개의 불안정한 문장단위 — the girl, the boy, (whose) dog — 를 기억 속에 담아 두었다가 이들을 (이번에는 역순으로) 각각의 해당 술어 — screamed, chased, barked — 에 연결시켜야 하는데, 이러한 작업은 인간의 일반적 지각기능의 한계를 넘어 선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6)의 문장들은 문법적이며 또 의미적으로도 전혀 하자가 없긴 하지만, "혼동"스럽고, 따라서 지각적으로 불허 (perceptually unprocessable) 되는 것이다. 그러나 "지각적으로 불허된다"는 말을 "전혀 사용 불가능하다"는 말과 동등시해서는 안된다. 다음과 같은 식귀를 보자.

Thy extreme hope, the loveliest and the last,
The bloom, whose petals nipped before they blew
Died on the promise of the fruit, is waste;
(Shelley, Adonais)

From that lone ruin, when the steed that panted
Paused, might be heard the murmur of the motion
Of waters, [...]
(Shelley, Laon and Cythna)

이 식귀에도 (6)에 언급된 문장들과 마찬가지로 중앙삽입 (center-embedding)이 중복되어 나타나 있지만, 허용성 여부를 떠나 이미 "사용"된 것이다. 시인은 인간의 일반적 지각기능에 극심한 "긴장"을 유발시킴으로써 자신의 심미적 욕구를 충족시켰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 경우 지각기능과 심미적 기능 사이의 긴장이 어떠한 미학적 가치를 지니는가 하는 문제 — 즉 위의 식귀의 미학적 적격성 (aesthetic well-formedness)의 문제 — 는 문학비평에서 다루어질 성격의 것이다.

이제 비문법적이면서 허용되는 경우에 대해 우선 다음의

식귀를 생각해 보자.

Music that gentlier on the spirit lies
Than tired eyelids upon tired eyes,
(Tennyson, The Lotus Eaters)

A cutpurse of the empire and the rule,
That from a shelf the precious diadem stole,
(Hamlet, III, iv)

여기서 보이는 동사의 위치는 "비문법적"이다. 그러나 특별한 형식이 요구되는 문학적 표현에서는 허용되는 즉, 사실 "시적 허용"이란 용어 자체가 "일반적으로는 허용 안됨"을 함축하는 것이다. 시적으로 허용되는 표현을 모두 수용하지 않는 문법체계는 독선적이며 따라서 해체되어야 한다는 식의 주장은, 임박적 현상과 특수 현상을 구분해서는 안된다는 말과 같으며, 따라서 이러한 주장이야 말로 독선이다. 예컨대 셰익스피어같은 문장의 대가가 위와 같은 표현을 썼으니 The pickpocket from the gem dealer a necklace stole 같은 문장도 일상대화에서 사용될 수 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우선 영어의 일반적 어순이 (예컨대) 한국어의 그것과 다름을 예측케 하는 문법체계를 정의하고 나서야 비로소 이 문법체계를 제압하고 활약하는 "시적 허용"의 미학적 체계를 운위할 수 있는 것이다. 실상 위와 같은 문장의 어순이 문법체계에서 다루어지지 않는 것도 아니다. 이 경우는 동사를 보폭어 뒤로 옮겨 놓는 "문체적 변형"이 일어났다고 정의되며, 문체적 변형은 언어 외적 요인 (여기서는 심미적 기능)에 의해 지배되는 것이다.

비문법적이면서 허용되는 경우의 또 다른 유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7. a. He is the kind of man that, when you come to think about him seriously, you'll truly find him free of selfish motives.

b. The girl who I saw the dog that bit her fell down.

(7a)의 문장이 비문법적임은 삽입구적 표현을 제거한 경우를 보아 알 수 있다.

8. *He is the kind of man that you'll truly find him free of selfish motives.

쉽게 말해, 있어서는 안됨 "여분의" 대명사 — 자리표시 대명사 (resumptive pronoun) — 가 있기 때문에 비문법적인 것이다. 그러나 어쨌든 (7a)는 허용된 문장이다. 기실 문체의 대명사가 없이는 (7)의 두 문장 중 어떤 것도 사용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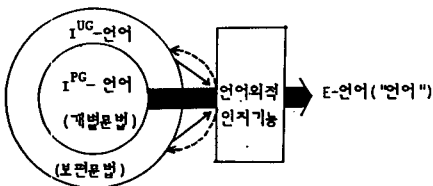
9. a. *He is the kind of man that, when you come to think about (him) seriously, you'll truly

find Ø free of selfish motives.

b.*The girl who I saw the dog that bit Ø fell down.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와 관련하여 유의할 만한 것은 (8)과 같은 문장은 히브리어나 아랍어 같은 언어에서는 문법적이며, 또한 불어의 일부 방언에서도 완벽한 문장이라는 사실이다. 즉 이들 언어에서는 자리표시 대명사가 자유로이 사용되므로 This is the man that I saw him 같은 문장이 I^{PG}-언어에 속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우리는 자리표시 대명사 채택(resumptive pronoun strategy)이 언어의 보편적 속성으로 존재하며, 원칙적으로는 이 채택을 사용하지 않는 언어들까지도 특수 여건 하에서는 이를 사용하는 것이라고 추찰할 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언어 간의 유사성과 차이를 동시에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기술적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자리차지 대명사 채택은 I^{UG}-언어의 원리로서 매개변형적으로 작용한다고 가정하자. 그리고 이 매개변형의 가치가 영어의 I^{PG}-언어에서는 마이너스(-)로, 히브리어나 아랍어의 I^{PG}-언어에서는 플러스(+)로 고정된다고 가정하자. 같은 선상에서, 불어의 표준어의 I^{PG}-언어에서는 -로, 일부 방언의 I^{PG}-언어에서는 +로 고정될 것이다. 이렇게 보면 (8)과 같은 문장은 영어의 개별문법에 대한 위반이므로 비문법적이다. 그런데 (7)의 예문들이 허용되는 것으로 보아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사람의 마음 속에도 자리차지 대명사 채택이 추상적 원리로서 존재하며, 비록 그가 습득한 개별문법에 의해 이 채택이 억압되어 있긴 하지만, 특수 상황에 의해 그 억압이 해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해제과정이 곧 언어기능과 여타 인지기능과의 상호작용이라 할 수 있다. 이를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즉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E-언어)는 원칙적으로 I^{PG}-언어의 외현된 형태이지만, 특수한 언어 외적 요구에 의해 때로는 I^{UG}-언어도 외현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개별문법을 위반하면서도 실제로 사용되는 위의 예문들도 기실 보편문법의 원리 내에서 허용됨이 암시된다. 즉 보편문법은 개별문법에 대한 위반 가능성의 한도를 설정한다고 할 수 있으니, 여기서 우리는 "잠정적으로 무한한 종류의 언어가 보편문법을 통해 언어학적으로 가능한 한정된 종류의 언어로 좁혀진다"는 촘스키의 말을 다시 한번 음미해볼 수 있다.

위에 언급된 '특수 여건'의 구체적 실체는 필자가 아는 한 아직 명확히 규명되어 있지 않다. 다만 관계접 구문이

충분히 깊고 복잡한 경우에 문제의 채택이 사용된다는 정도는 널리 알려져 있다. 더욱 구체적 속성은 언어기능 밖의 인지 기능에 관한 연구와의 상호협력 하에 밝혀질 것이므로, 순수 언어이론은 이러한 연구 — 이를테면 응용언어학적 연구 — 에 대해 형식화된 문제를 제기해 주는 셈이다.

자리표시대명사 채택은 한국어에서도 영어와 같이 작용하는 것 같다.

10. a. * 어제 그걸 산 채
- b. 그걸 사느라고 몇달치 용돈을 다 써버린 라디오
- c. * 사느라고 몇달치 용돈을 다 써버린 라디오

(10 b, c)의 예문들은 다음의 예문들과 대조된다.

11. a. 그걸 먹은 사람이 모두 죽어버린 약
- b. 먹은 사람이 모두 죽어버린 약

여기서 제기되는 문제는, (10c)는 불가능한데 (11b)는 가능하다는 것뿐이 아니고, 영어에서는 후자같은 문장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자리표시 대명사에 관한 연구는 이러한 차이도 설명을 해야 할 것이다.

결국 이론언어학은 언어의 모든 측면을 한꺼번에 다루는 데에서 비롯되는 비과학적 어휘들을 지양하고, 순수언어학적 영역 — 즉 언어기능 — 을 입차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인지체계와 관련한 의문을 과학적 차원에서 형식화하려는 시도이다. 물론 언어기능의 한계가 미리부터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이론적 체계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다. 따라서 과학적 어휘로 규정될 수 있는 언어적 측면은 원칙적으로 어떤 것이든 '문법'의 영역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와는 반대로 과거에는 문법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되던 언어의 측면도 이론이 체계화됨에 따라 문법의 영역에서 배제될 수도 있는 것이다. 후자의 전형적 예로는 이른바 선택제약(selectional restrictions)을 들 수 있다.